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혁진의원·복기왕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925
----------	-------

발의연월일 : 2026. 1. 8.

발 의 자 : 최혁진·복기왕·이수진

김동아·염태영·박지원

김우영·민형배·김영배

정혜경·윤종오·민병덕

이성윤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은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으로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사회 복지를 위한 활동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법」을 통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종교·자선·학술·구호 등 그 밖에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는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의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사회적협동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포함하도록 하여 사회적협동조합의 지속적인 운영과 적극적인 활동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106조제1항제14호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1항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가가치세 면제에 대한 적용례) 제106조제1항제1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①-----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	-----
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 -----
제3호까지, 제4호의5 및 제12호	-----
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	-----
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
제5호 및 제9호의2는 2028년 1	-----
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	-----
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하고,	-----
제8호의3은 2015년 1월 1일부	-----
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실시	-----
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하	-----
며, 제9호는 2023년 12월 31일	-----
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
제9호의3은 2024년 12월 31일	-----
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한다.	-----.
1. ~ 13. (생 략)	1. ~ 13. (현행과 같음)
<u><신 설></u>	<u>14.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u>
	<u>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u>

② ~ ⑤ (생략)	<u>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u> <u>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u> <u>는 것</u> ② ~ ⑤ (현행과 같음)
------------	---